

귀하의 청구 정보

NYSIF는 각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 치료와 적시 보상 지불을 조율하기 위해 [케이스 매니저](#)를 배정합니다.

부상을 당한 경우

고용주 또는 감독자에게 부상에 대해 되도록 빨리 알립니다.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[양식 C-3](#)을 작성하여 근로자 보상 위원회(Workers' Compensation Board, WCB)로 제출하세요.

직업병의 경우, 청구인은 장애를 입은 후 2년 이내 또는 청구인이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
부상당한 근로자는 WCB 공인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를 선택하여 의료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요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.
- 빠른 회복을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
-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락 받았을 때 NYSIF에 귀하의 부상,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.
- 고용주에게 언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, 업무 능력의 변화 및 업무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.
- NYSIF 또는 고용주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료 제공자가 허용되지 않는 청구에 대한 지급 보장 양식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요청 시 모든 독립 의료 검사([IME](#))를 받습니다.
- 참석하라는 통지가 있으면, 청문회에 참석합니다.

의료 네트워크 및 약국 네트워크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[네트워크 혜택\(Network Benefits\)](#)을 참조하십시오.